

1.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생계비 용자 제도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임금채권보장법」이 개정(법률 제17604호, 2020. 12. 8. 공포, 2021. 6. 9. 시행)됨에 따라 생계비 용자의 기준, 금액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해당금의 지급범위에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가 추가됨에 따라 해당금의 지급범위와 관련된 규정 및 서식에서도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를 추가하는 등 관련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고용노동부령 제 호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중 “퇴직금 또는 휴업수당(이하 “임금등”이라 한다)을”을 “퇴직급여등, 휴업수당 또는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이하 “임금등”이라 한다)를”로 한다.

제8조제2항제4호 중 “임금 또는 휴업수당”을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로, “퇴직금”을 “퇴직급여등”으로 한다.

제8조의6의 제목 “(용자 대상 사업주)”를 “(체불 임금등 지급을 위한 용자 대상 사업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7조의2에 따른 용자(이하 “용자”라 한다)”를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체불 임금등 지급을 위한 용자(이하 “체불 임금등 용자”라 한다)”로 한다.

제8조의7의 제목 “(용자금지급대상근로자)”를 “(체불 임금등 용자금지급대상근로자)”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7조의2에 따른 용자금”을 “법 제7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체불 임금등 용자금”으로, ““(용자금지급대상근로자)””를 ““(체불 임금등 용자금지급대상근로자)””로 한다.

제8조의8의 제목 “(용자금 지급 사유의 확인 등)”을 “(체불 임금등 용자요건의 확인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용자”를

“체불 임금등 용자”로, “용자금 지급사유 확인신청서”를 “체불 임금등 용자요건 확인신청서”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용자금지급 대상근로자”를 각각 “체불 임금등 용자금지급대상근로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용자금 지급사유 확인통지서”를 “체불 임금등 용자요건 확인통지서”로 한다.

제8조의9의 제목 “(용자의 신청)”을 “(체불 임금등 용자의 신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용자”를 “체불 임금등 용자”로, “임금청산”을 “체불 임금등 청산”으로, “용자금 지급사유 확인통지서”를 “체불 임금등 용자요건 확인통지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용자”를 “체불 임금등 용자”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용자금지급대상근로자”를 “체불 임금등 용자금지급대상근로자”로 한다.

제8조의10의 제목 “(용자 금액과 용자 조건)”을 “(체불 임금등 용자의 금액과 조건)”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용자”를 “체불 임금등 용자”로 한다.

제8조의11의 제목 “(용자 계약의 체결)”을 “(체불 임금등 용자 계약의 체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용자 신청”을 “체불 임금등 용자 신청”으로, 같은 항 및 제2항 중 “용자계약”을 각각 “체불 임금등 용자 계약”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용자 계약”을 “체불 임금등 용자 계약”으로 한다.

제8조의1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12(임금등 체불 근로자 생계비 용자) ① 법 제7조의2제2항에 따

른 임금등 체불 근로자 생계비 용자(이하 “생계비 용자”라 한다)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가동 중인(휴업을 포함한다) 임금등 체불 사업장에 재직 중이거나 용자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일 것. 다만, 「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로서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건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건설일용근로자”라 한다)는 용자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30일 이상인 경우로 한다.

2. 용자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다만,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전년 통계청 「건설업임금실태조사, 개별직종노임단가」 중 하반기 보통 인부 노임 단가의 5일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이상 임금등이 체불 되었을 것.

② 생계비 용자 금액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상한액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생계비 용자의 상한액은 임금, 물가상승률 및 임금채권보장기금(이하 “기금”이라고 한다)의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1. 재직 근로자: 용자신청일 이전 1년 이내에 발생한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의 체불금액 내에서 해당 근로자가 신청한 금액

2. 퇴직 근로자: 최종 3개월분의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의 체불금액 내에서 해당 근로자가 신청한 금액

③ 생계비 용자 기간은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1. 거치기간: 3년 이내

2. 분할상환기간: 5년 이내

④ 생계비 용자의 금리는 연이율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중금리 등을 반영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⑤ 생계비 용자를 받으려는 사람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임금등이 체불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공단에 생계비 용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생계비 용자의 신청,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11조의3 중 “임금채권보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기금”으로 한다.

제13조제2호 중 “체불 임금등의 지급을 위한 사업주 용자”를 “체불 임금등 용자 및 생계비 용자”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임금 또는 휴업수당과”를 “임금,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와”로, 같은 서식 중 “퇴직금”을 “퇴직급여등”으로 한

다.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호의2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의4서식, 별지 제6호의5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호의6서식의 제목 “임금청산을 위한 사업주 용자신청서”를 “체불 임금등 청산을 위한 사업주 용자신청서”로 한다.

별지 제7호의3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8호서식 중 “퇴직금”을 “퇴직급여”로 하고, 같은 서식 중 “퇴직금지급대상전체근로자수”를 “퇴직급여 지급대상 전체 근로자수”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항제1호, 제8조제2항제4호,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7호의3서식, 별지 제8호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뒤쪽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퇴직한 날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	년 월 일	채불 임금등	임금	원
				휴업수당	원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급여	원
퇴직급여등				원	

사업 활동 현황	사업개시일(년 월 일), 사업정지일(년 월 일)
----------	---

재판상 도산의 신청 여부	[]신청	[]미신청
---------------	-------	--------

위의 사업주는 도산등사실인정 대상 사업주로서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되는 과정에 있으며,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하여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1항 및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합니다.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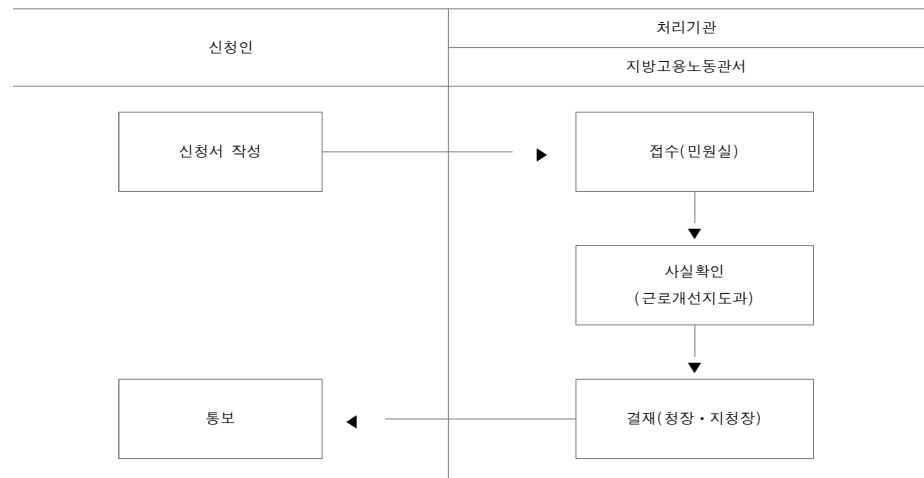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① 사업의 종류란에는 건설업, 운송업, 도매업, 소매업 또는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종을 적고, 그 밖에 경우에는 모두 일반사업으로 적습니다.

1.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은 근로자가 해당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하며, 퇴직한 근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 1명이 신청서를 제출하면 그 외의 근로자는 신청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2. ② 해당금 관련업무 지원 공인노동사 지정신청을 할 수 있는 근로자는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을 하는 경우 상시근로자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이면서, 해당 사업장의 전체 월평균근로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이하인 사업에서 퇴직한 근로자로,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3의3제1항에 따른 공인노동사로부터 해당금 청구서 작성 및 사실확인 등에 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해당금을 받으면 「임금채권보장법」 제14조에 따라 그 해당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해당금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상시근로자수는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이전에 해당 사업을 한 최종 6개월(1개월 중 하루라도 사업을 한 경우 그 달을 포함한 최종 6개월을 말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에 사업을 한 일수로 나눈 수로 한다.
(건설업의 경우에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지 않고 관할 대로는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계산식에 따른다)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일반채당금 지급청구서

[체당금(替當金)이란 기업이 도산하여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및 퇴직급여등을 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및 퇴직급여등을 의미합니다.]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①접수번호	②접수일	처리기간 7일
③접수 지방고용노동관서		
지방고용노동청(지청)		
청구인	④성명	⑤ 주민등록번호
	⑥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⑦채당금(*) 원	⑧채당금 구분(*) { }임금 {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 }퇴직급여등
임금의뢰	⑨입금은행	
	⑩예금주	
	⑪계좌번호 * 압류방지 전용계좌로 입금받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압류방지 전용계좌를 발급받아 기재	
대상사업주	사업장명	⑫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소재지
	⑬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여부(*) []가입 []미가입	⑭확인통지서 대장번호(*)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채당금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청구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첨부서류	없 음	수수료	없 음			
처 리	선람	결 재	담당	차장	부장	본부장(지사장)
	조회확인					
	입력확인					
공지사항						

- 이 민원의 처리 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로 전화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채당금을 받으면 「임금채권보장법」 제14조에 따라 그 채당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채당금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작 성 방 법		
굵은 선 안의 별표(*)는 청구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⑨~⑪란에는 청구인이 소지하고 있는 본인의 예금계좌 중에서 채당금을 지급받기 희망하는 예금계좌에 대한 사항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만약 채당금을 압류방지 전용계좌(「임금채권보장법」 제11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채당금수급계좌)로 입금받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담당 금융기관에서 청구인 본인 명의의 채당금수급계좌를 발급받은 뒤 그 계좌에 대한 사항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 일반채당금 지급청구서는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파산선고등이 있거나 도산등사실인정이 있는 날부터 2년 이내에 별지 제4 호서식의 채당금 등 확인신청서와 함께 지방고용노동청(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처리절차		
이 청구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청구인	경유기관	처리기관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지사)
청구서 작성	지방고용노동관서	근로복지공단
은행 (예금계좌)	입금 처리	결 재 (본부장·지사장)

소액채당금 지급청구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근무기간 및 퇴직일		①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번호			
년 월 일 ~ 년 월 일					
②소(訴) 제기 또는 신청 등을 한 날		③판결등이 있는 날		④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총 확정금액	
				원	
청구인	⑤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총 확정금액에 대하여 채당금 지급청구일까지 사업주나 퇴직연금사업자 등으로부터 지급 받은 금액(사업주 지급금, 퇴직연금, 이행보증보험 및 출국만기보험 등의 금액)				
	원				
	가. 지급청구일까지 지급받지 못했으나, 향후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지급받을 퇴직연금이 있습니까? []에 []아니오				
	나. 지급청구일까지 지급받지 못했으나, 향후 이행보증보험 및 출국만기보험으로 지급받을 보험금이 있습니까? []에 []아니오				
	⑥청구일 현재까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금액				
가. 최종 3개월분의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원			
나.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원			
⑦지급받아야 할 채당금		원			
⑧임금회	입금은행	예금주	계좌번호		
	* 압류방지 전용계좌로 입금받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압류방지 전용계좌를 발급받아 기재				
⑨대상사업주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소재지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채당금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청구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⑩ 첨부서류	1.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 있는 경우 그 정보 또는 사본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국판결, 소송상 화해 또는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확정증명원 정보 또는 사본 가.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종국판결 나.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른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 중 소송상 화해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마목에 따른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3.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사본	수수료 없음
--------	--	--------

관계기관 자료제공 요청 동의

본인은 귀 기관이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제1항제6호·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 법률구조공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6조에 따른 퇴직연금사업자 및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로부터 제공받아 소액채당금 지급 등의 처리 업무에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청구인이 직접 관련 자료를 소액채당금 지급청구서 접수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청구인 (서명 또는 인)

금지사항

- 이 민원의 처리 결과에 대한 만족도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하여 귀하의 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로 전화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채당금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작성방법

-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번호”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발급한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의 발급번호를 말합니다.
- “소(訴) 제기일 또는 신청 등을 한 날”은 체불 임금등을 지급받기 위하여 소장을 제출하거나 신청 등을 한 날을 말합니다.
- “판결등이 있는 날”은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국판결, 지급명령, 소송상 화해 및 청구의 인낙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또는 이행권고결정 등이 있는 날을 말합니다.
-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총 확정금액”은 법원에서 판결등을 통하여 인정되어 확정된 체불 임금등을 말합니다.
-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총 확정금액에 대하여 현재까지 사업주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은 법원에서 확정된 체불 임금등 중 지급청구서 제출일 현재까지 사업주나 퇴직연금사업자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임금등이나 퇴직연금 등의 금액을 말합니다.
- ⑥란의 가. “최종 3개월분의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는 소액채당금 지급청구서 제출일 현재 기준,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전체 체불 임금등 중 퇴직일부터 최종 3개월에 해당하는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를 말합니다.
- ⑥란의 나.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은 소액채당금 지급청구서 제출일 현재 기준,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전체 체불 임금등 중 퇴직일부터 최종 3년간에 해당하는 퇴직급여등을 말합니다.
- “지급받아야 할 채당금”은 ⑥란의 “가”와 “나”의 합계 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합계 금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의 상한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시한 그 금액의 상한이 지급받게 될 채당금의 금액이 됩니다.
- “임금의뢰”란에는 청구인이 소지하고 있는 본인의 예금계좌 중에서 소액채당금을 지급받기 희망하는 예금계좌에 관한 사항을 적습니다. 만약 소액채당금을 압류방지 전용계좌(「임금채권보장법」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채당금수급계좌)로 입금받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담당하는 금융기관에서 청구인 본인 명의의 채당금수급계좌를 발급받은 뒤 그 계좌에 대한 사항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 “대상사업주”란에는 청구인이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한 사업장의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소액채당금 지급청구서는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등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근로복지공단 관할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처리절차

이 청구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체당금 등 확인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	-----	------	-----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입사일	년 월 일	임금 지급일	매월 일

대상 사업주	사업장명		전화번호
	대표자성명		상시근로자수
	소재지		

확인 신청 사항	1. 파산선고 등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이 있는 날 및 그 신청일 2. 퇴직일 및 퇴직 당시의 연령 3. 최종 3개월분의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미지금액 4. 지급받아야 할 체당금의 금액 5. 해당 사업주가 「임금채권보장법」의 적용 대상이 된 날부터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한 사실
----------------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수수료 없음
관계기관 자료제공 요청 동의

본인은 귀 기관이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제1항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6조에 따른 퇴직
연금사업자 및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로부터 제공받아 체당금 등의 확인 업무에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자료를 체당금 등 확인신청서 접수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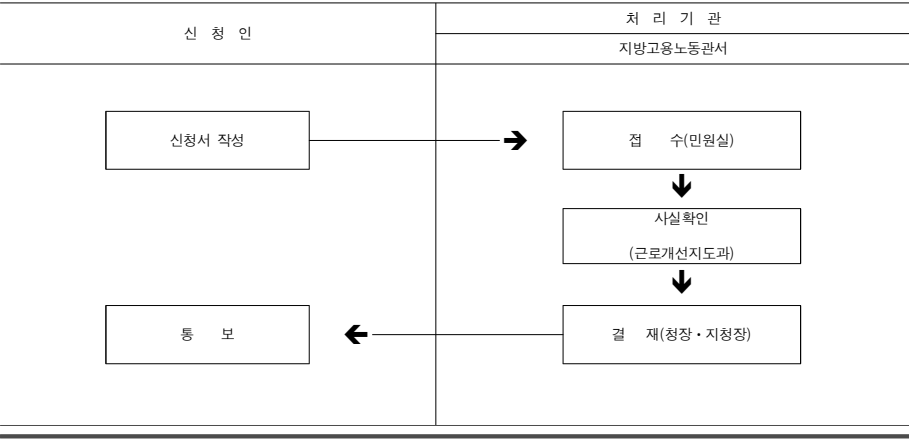
인)

작성방법

1. 입사일란에는 대상사업장에 신청인이 입사했던 날을 적고, 임금지급일란은 대상사업장에 근무할 당시의 임금지급일을 적으
며, 대상사업주란은 신청인이 퇴사할 당시의 사업장에 대한 사항을 적으면 됩니다.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받으면 「임금채권보장법」 제14조에 따라 그 체당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체당금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확인통지서

※ 뒤쪽의 확인통지서 보는 방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대장번호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입사일					
대상 사업주	사업장명			사업의 종류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소재지			(전화번호:)					
	사업개시일			상시근로자수 명					
지급 사유 및 지급 요건	(도산·파산·회생절차 개시)의 인정일 또는 결 정일		년 월 일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 휴가기간중 급여	최종 1개월분	임금	원	
						휴업수당	원		
						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원		
	(도산·파산·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일		년 월 일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 휴가기간중 급여	최종 2개월분	임금	원	
						휴업수당	원		
						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원		
	신청자의 퇴직일		년 월 일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 휴가기간중 급여	최종 3개월분	임금	원	
						휴업수당	원		
						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원		
	신청자의 퇴직당시 나이		만 세		퇴직급여등	최종 1년분	원		
				최종 2년분		원			
				최종 3년분		원			
※판정구분		적격	부적격	체 당 금	계		원		
근로자의 지급대상 요건 판정		(인)	(인)		임금	원			
					휴업수당	원			
사업주의 지급대상 요건 판정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원			
				퇴직급여등	원				

귀하가 신청하신 확인사항에 대하여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본문에 따라 위와 같이 확인하여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직인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안내

이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안내문

※ 확인통지서를 보는 법

확인통지서의 굵은 선 안의 “판정 구분”란은 귀하의 확인사항에 대하여 사실 확인을 한 결과 귀하가 해당금의 지급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판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난 중 “적격”란에 날인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귀하는 해당금의 지급대상이 되며, “부적격”란에 날인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귀하는 해당금의 지급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지급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체당금”란의 굵은 선 안에 적힌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확인통지서상의 확인사항에 대하여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확인신청서를 제출한 아래의 지방고용노동관서 근로개선지도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참고사항

체당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귀하가 제출하신 체당금 지급청구서에 적힌 귀하의 예금계좌로 체당금이 입금됩니다. 체당금의 지급은 귀하의 퇴직 당시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역 본부 또는 지사에서 지급하게 되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근로복지공단 사무소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해당 관서의 전화번호>

○○지방고용노동청(지청) 근로개선지도과 ☎(0000) 000-0000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 ☎(0000) 000-0000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확인 신청 사항	1.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사실 2.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사업주로서 해당 사업을 1년 이상 영위하는 사실 3.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별표 1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상시근로자수가 300인 이하의 사업장인 사실 4. 융자금 지급대상 근로자의 입사일 및 퇴직일(6개월 이상 계속 근로 여부) 5. 융자 <u>요건</u> 확인 신청일을 기준으로 융자금 지급대상 근로자의 체불금품 총액
-----------------	--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사일	퇴사일	재직기간	체불금액(천원)						
					계	임금		퇴직급여등		기타	
						금액	기간	금액	기간	금액	기간
계											

100

100

100

신청인(사업장대표)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1.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에 따른 일시적인 경영상 어려움 등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2. 사업주가 해당 사업을 1년 이상 영위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상시근로자수가 300명 이하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4. 확인받고자 하는 근로자의 체불 임금등의 금액, 체불 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5. 확인받고자 하는 근로자의 입사일과 퇴사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m²)

신 청 인	처리기관
	지방고용노동청(지청)
신청서 작성	접 수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지청) 민원실) ↓ 확인·검토 (근로개선지도과) ↓ 결 재 (청(지청)장)
사업주 통보 (응자 조건 확인통지서)	

1. 재고량 증가, 매출액·생산량 감소,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합니다.
2. 사업개시일은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사업의 사업주가 된 날(근로자를 채용하여 사용하기 시작한 날)을 기초로 작성합니다.
3. 임금대장, 근로자명부 등 근로자수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4. 임금대장, 퇴직금 산정내역 등 **채물 임금등의 금액, 채물 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 자료입니다.
5. 근로자의 입사일과 퇴직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합니다.(근로계약서, 4대보험 피보험자격관련 서류 등)

(앞쪽)

(앞쪽)

1. 신청인 (사업주)	사업장명	대표자명
	생년월일	업종(주산품)
	상시근로자수 명	사업개시일
	소재지	(전화번호:)

2. 응자요건 확인신청일	년 월 일
3. 체불인원 및 체불금품 총액(천원)	체불인원 (명), 체불금품 총액 (천원)
4.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 등 사유	가(), 나(), 다(), 라(), 마(), 바(), 사()

[illegible]

150 151 152

이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확인통지서 보는 법

1. "상시근로자"는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신정한 상시근로자수입니다.
2. "체불인원"은 용자신청을 위하여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8에 따라 사업주가 확인을 요청한 근로자의 수이며, "체불금품 총액"은 이들의 체불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3.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 등 사유"는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하며, 해당하는 번호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 재고량: 기준달(확인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의 재고량이 직전 연도의 월평균 재고량의 50% 이상 증가
 - 나. 생산량: 직전 연도 월평균(직전 연도 같은 달, 직전 3개월의 월평균) 대비 생산량이 15% 이상 감소
 - 다. 매출액: 직전 연도 월평균(직전 연도 같은 달, 직전 3개월의 월평균) 대비 매출액이 15% 이상 감소
 - 라. 매출액 또는 재고량: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대비 계속 감소 또는 증가 추세
 - 마. 원자재 가격: 직전 연도 월평균(직전 연도 같은 달, 직전 3개월의 월평균) 대비 원자재 가격이 15% 이상 상승
 - 바. 거래대금: 확인 신청일 전일 현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지 못한 거래대금이 전체 근로자에 대한 총 체불금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
 - 사. 그 밖에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위의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사유에 준하는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용자금 지급 대상 근로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 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6에 해당하는 사업주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8제1항에 따른 확인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 나.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6에 해당하는 사업주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8제1항에 따른 확인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

체불 임금등 · 사업주 확인서

(앞쪽)

발급번호										
①체불 근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위				근무기간					
	임금산정기간				정기임금지급일					
②체불 사업주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실제 대표자	성명 (법인인 경우에는 실제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명의 대표자	성명 (법인인 경우에는 명의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실제대표자								
		명의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상시 근로자수				
	사업의 종류					사업기간				
③적법한 직상 건설 사업자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실제 대표자	성명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명의 대표자	성명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실제대표자								
		명의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상시 근로자수				
	사업의 종류					사업기간				
④체불 임금등 내역 (원)	총 금액		원							
	최우선 변제금	구분	계	임금	퇴직급여등	휴업수당	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	재해보상금		
		계								
		최종 1개월(1년)분 <00년 00월 00일~00년 00월 00일>								
		최종 2개월(2년)분 <00년 00월 00일~00년 00월 00일>								
		최종 3개월(3년)분 <00년 00월 00일~00년 00월 00일>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⑤체불 임금등 및 그 밖의 금품등의 상세내역(원)								
구분	합계	임금	퇴직급여등	상여금	휴업수당	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	미사용 연차수당	그 밖의 금품
계								
0000년 00월 <00년 00월 00일~00년 00월 00일>								
0000년 00월 <00년 00월 00일~00년 00월 00일>								
0000년 00월 <00년 00월 00일~00년 00월 00일>								
0000년 00월 <00년 00월 00일~00년 00월 00일>								
확인근거								
사용용도 (신청 부수)				확인자	근로감독관 ○○○ (전화번호:)			
첨부 서류	1. 2.	참고		①수사 중 ②취하종결 ③기소송처 ④불기소송처 ⑤기소종지 송치				
귀하의 체불 임금등 및 체불사업주에 관한 증명 신청에 대하여 「임금채권보장법」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확인 · 발급합니다.								
20 . . .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직인								
※ 비교								
1. 퇴직금에 대한 체불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감독관집무규정」 별지 제24호서식의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를 첨부합니다.								
2. ④체불 임금등 내역란의 최종 1개월(1년)분, 최종 2개월(2년)분, 최종 3개월(3년)분은 근로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1개월(1년)씩 소급 한 기간 동안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 등의 내역을 적습니다.								
3. ⑤체불 임금등 및 그 밖의 금품등의 상세내역란은 근무한 기간을 월별로 구분하여 아래 예시와 같이 작성합니다. (예시) 임금산정기간이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2015년 5월 16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 2015년 5월<2015년 5월 1일~5월 16일>, 2015년 4월<2015년 4월 1일~4월 30일>, 2015년 3월<2015년 3월 1일~3월 31일>, 2015년 2월<2015년 2월 1일~2월 28일> 등으로 각각 구분하여 해당 기간의 체불 임금등의 내역을 적습니다.								
4. 대상 사업주가 동일하여 여러 명이 함께 확인서 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①체불근로자, ④체불 임금등 내역, ⑤체불 임금등 및 그 밖의 금품등의 상세내역란에는 대표 신청인에 대한 내역을 적고, 그 밖의 신청인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별도 서식에 따라 해당 인적사항과 체불 임금등 내역 등을 작성합니다.								
5.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는 「임금채권보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에도 발급되고 있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 ① (생략)	제2조(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② ----- ----- ----- -----.
1. 해당 사업주의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되는 과정에 있으며, 임금, 퇴직금 또는 휴업수당(이하 “임금등”이라 한다)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하다는 사실을 기재하거나 증명하는 자료(해당 사실의 기재나 증명이 가능한 경우로 한정한다)	1. ----- ----- 퇴직급여등, 휴업수당 또는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이하 “임금등”이라 한다)를 ----- ----- -----
2. (생략)	2. (현행과 같음)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제8조(채당금의 지급) ① (생략)	제8조(채당금의 지급) ① (현행과 같음)
② 제5조제2호에 따라 소액채당금 지급청구서를 제출받은 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지급청구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② ----- ----- ----- ----- -----

확인하여 소액채당금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청구인에게 지급할 소액채당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 금액	4. -----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 퇴직급여등 -----
5.·6. (생략)	5.·6. (현행과 같음)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제8조의6(용자 대상 사업주) ① 법 제7조의2에 따른 용자(이하 “용자”라 한다) 대상이 되는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제8조의6(채불 임금등 지급을 위한 용자 대상 사업주) ①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채불 임금등 지급을 위한 용자(이하 “채불 임금등 용자”라 한다)----- -----.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의7(용자금지급대상근로자) 법 제7조의2에 따른 용자금 지급 대상이 되는 근로자(이하 “용자금지급대상근로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8조의7(채불 임금등 용자금지급대상근로자) 법 제7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채불 임금등 용자금----- ----- “채불 임금등 용자금지급대상근로자”----- -----.

1. 2. (생략)

제8조의8(용자금 지급 사유의 확인 등) ① 용자를 받으려는 사업주는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별지 제6호의4서식의 용자금 지급사유 확인신청서를 제출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받아야 한다.

1. (생략)

2. 용자금지급대상근로자가 제8조의7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사실

3. 확인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 용자금지급대상근로자에 대한 총 체불금액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해당 사항을 확인한 경우 지체 없이 별지 제6호의5서식의 용자금 지급사유 확인통지서에 따라 그 내용을 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의9(용자의 신청) ① 용자를 받으려는 사업주는 제8조의8제2항에 따른 확인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별지 제6호

1. 2. (현행과 같음)

제8조의8(체불 임금등 용자 요건의 확인 등) ① 체불 임금등 용자-----체불 임금등 용자요건 확인신청서 -----.

1. (현행과 같음)

2. 체불 임금등 용자금지급대상 근로자-----

3. -----체불 임금등 용자금지급대상 근로자-----

② -----

제8조의9(체불 임금등 용자의 신청) ① 체불 임금등 용자-----

의6서식에 따른 임금청산을 위한 사업주 용자신청서에 통지받은 용자금 지급사유 확인통지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용자 신청은 사업주당 총 1억원의 범위에서 횟수의 제한 없이 할 수 있다. 이 경우 용자금지급대상근로자 1명에 대한 용자 신청 금액의 상한은 1,000만원으로 한다.

제8조의10(용자 금액과 용자 조건) ① 용자 금액은 제8조의8제1항제3호에 따라 확인된 총 체불금액 중 사업주가 신청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③ (생략)

제8조의11(용자 계약의 체결) ① 제8조의9에 따라 용자 신청을 받은 공단은 예산의 범위에서 용자대상자를 결정하고 해당 사업주와 용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신용평가를 통해 용자금 회수가 어렵다고

----- 체불 임금등 청산 -----

- 체불 임금등 용자요건 확인통지서 -----.

② ----- 체불 임금등 용자 -----.

----- 체불 임금등 용자금지급 대상근로자 -----.

제8조의10(체불 임금등 용자의 금액과 조건) ① 체불 임금등 용자 -----.

② ③ (현행과 같음)

제8조의11(체불 임금등 용자 계약의 체결) ① ----- 체불 임금등 용자 신청-----

----- 체불 임금등 용자 계약-----.

② -----

판단되는 경우 용자계약 체결을 거부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용자 계약의 체결 및 용자금 지급에 관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신 설>

----- 체불 임금등 용자 계약 -----.

③ -----
----- 체불 임금등 용자 계약-----

-----.

제8조의12(임금등 체불 근로자 생계비 용자) ① 법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임금등 체불 근로자 생계비 용자(이하 “생계비 용자”라 한다)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가동 중인(휴업을 포함한다) 임금등 체불 사업장에 재직 중이거나 용자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일 것. 다만, 「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로서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건설일용근로자”라 한다)는 용자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30일 이상인 경우로 한다.

2. 용자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다만,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전년 통계청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개별직종노임단가」 중 하반기 보통 인부노임 단가의 5일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이상 임금 등이 체불 되었을 것.

② 생계비 용자 금액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상한액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생계비 용자의 상한액은 임금, 물가상승률 및 임금채권보장기금(이하 “기금”이라고 한다)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1. 재직 근로자: 용자신청일 이전 1년 이내에 발생한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의 체불금액 내에서

해당 근로자가 신청한 금액

2. 퇴직 근로자: 최종 3개월분의
임금 · 휴업수당 · 출산전후휴
 가기간 중 급여 및 최종 3년간
 의 퇴직급여등의 체불금액 내
 에서 해당 근로자가 신청한
 금액

③ 생계비 용자 기간은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경제상황 등
 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1. 거치기간: 3년 이내
 2. 분할상환기간: 5년 이내

④ 생계비 용자의 금리는 연이
율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
 하는 범위에서 시중금리 등을
 반영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
 한다.

⑤ 생계비 용자를 받으려는 사
람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임금등이 체불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공단에 생계
 비 용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생계비 용자의 신청,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11조의3(기금관리요원) 고용노 동부장관은 <u>임금채권보장기금</u> (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 적 · 전문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 제22조에 따라 준용되는 「산업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91 조제1항에 따른 기금의 회계기 관을 보조하는 기금관리요원을 둘 수 있다.	제11조의3(기금관리요원) ----- ----- 기금----- ----- ----- ----- ----- ----- ----- ----- -----.
제13조(업무처리규정) 공단은 영 제24조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 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해서 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 아 해당 업무처리에 필요한 규 정을 정해야 한다.	제13조(업무처리규정) ----- ----- ----- ----- ----- ----- ----- ----- -----.
1. (생 략) 2. 법 제7조의2에 따른 <u>체불 임 금등의 지급을 위한 사업주 용자</u> 업무 3. 4.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 <u>체불 임 금등 용자 및 생계비 용자</u> -- -- 3. 4. (현행과 같음)